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를 제공하는
시·군 등에 특별조정교부금 20%를 우선 배분〉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2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9.
3. 회부연월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광역시세·도세 등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특화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인가, 허가 또는 승인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유치의 이익을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를 제공하는 시·군 등에 특별조정교부금 20%를 우선 배분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²⁾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인가, 허가 또는 승인한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¹⁾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u><신설></u>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

	<u>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인가, 허가 또는 승인한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특화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조정교부금의 우선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도지사
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보한 재원인 시·군
조정교부금 중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³⁾와 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
분 조례⁴⁾에서 정하고 있음.

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특별조정교부금 배
분 사유에는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
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
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4조제2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제4항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 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 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2.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 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3)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경상남도 조정교
부금 배분 조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충청북도 조
정교부금 배분 조례」

4) 「대구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인천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3.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3. 취득세, 레저세 등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4. 일반조정교부금이 재원형성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시·군 간 재정형평화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광역시의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사유에는 군의 일반조정교부금과 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내용]

「대구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제4항	「인천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제3항
1. 군의 일반조정교부금과 구의 기준 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1. 군의 일반조정교부금과 구의 기준 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2. 청사, 그 밖의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3. 지방세제 개편 또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정 등으로 현격한 재원 감소나 구간 큰 재정격차가 발생하여 재정보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4. 그 밖에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경우
4. 시정 역점시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5.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의 규모는 8,450억원임.
이 중 경기도가 4,298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 971억원, 충청남도
663억원, 경상북도 590억원, 충청북도 493억원의 순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10,084,732	9,077,186	1,007,547	8,356,676	7,511,718	844,958
부산광역시	59,765	53,790	5,975	52,112	46,901	5,211
대구광역시	51,621	46,459	5,162	54,425	48,984	5,441
인천광역시	22,752	20,477	2,275	18,765	16,889	1,876
울산광역시	42,748	38,473	4,275	56,849	51,164	5,685
경기도	5,155,842	4,640,258	515,584	4,297,935	3,868,142	429,793
강원특별자치도	388,935	347,392	41,543	318,000	280,862	37,138
충청북도	649,234	583,886	65,348	496,800	447,545	49,255
충청남도	731,169	657,090	74,079	660,559	594,264	66,295
전북특별자치도	501,942	450,088	51,854	452,384	403,546	48,838
전라남도	520,646	469,144	51,502	378,018	338,802	39,216
경상북도	721,612	655,509	66,103	598,846	539,835	59,012
경상남도	1,238,466	1,114,620	123,847	971,983	874,785	97,198

자료: 행정안전부

예를 들어, 충청남도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663억원 중 49억원을
천안시에 배분했는데, 대상 사업에는 천안시립노인요양원 건립(10억원),
점신후소하천 정비사업(3억원), 면도 101호 외 2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3억원), 천안 야간명소 개선사업(7억원), 대로 2-1호 도로 확장공사(3억원), 시도 1호선 도로 확장공사(3억원), 천안시민의 종 종각 건립(3억원+3억원), 천안문화관 리모델링 사업(3억원), 천호지 야간경관 개선 및 공간특성화 사업(10억 5,000만원)이 있음⁵⁾.

[2023년도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시군명	차수	사업명	교부액
계			66,295
천안시		10건	4,850
천안시	4.4.	천안시립노인요양원 건립	1,000
천안시	5.1.	점신후소하천 정비사업	300
천안시	5.1.	면도101호 외2개소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00
천안시	5.1.	천안 야간명소 개선사업	700
천안시	6.22.	대로2-1호(쌍용대로~천고사거리)도로확장공사	300
천안시	6.22.	시도1호선(희망공원~속셈말삼거리)도로확장	300
천안시	6.22.	천안시민의 종 종각 건립	300
천안시	6.22.	천안 문화관 리모델링 사업	300
천안시	11.15.	천호지 야간경관 개선 및 공간특성화 사업	1,050
천안시	11.15.	천안시민의 종 종각 건립	300
공주시		11건	4,500
공주시	5.1.	공주 시립테니스장 개선 사업	200
공주시	5.1.	상왕도로(시도23호) 확포장(2구간)	600
공주시	6.5.	송산 소하천 정비	300
...	...	...	...

자료: 공공데이터 포털

5) 충청남도_특별조정교부금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124597/fileData.do>

개정안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의 20%를 전략산업 특화단지(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 시설의 설치를 인가, 허가 또는 승인한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의 20%를 우선 배분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보다 많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등을 공급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관점에서는 개정안을 통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한 시·군 또는 자치구가 얻는 혜택을 공유하는 방법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통해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는 현재보다 적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재원으로 구성되어 배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은 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가사업에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지방재원인 특별조정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① 「지방재정법」 제20조 및 제21조⁶⁾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 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②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에서 ‘특정한 재정수요’라는 용도만 지정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 제도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할 수 있고, ④ 추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⁷⁾), 뿌리산업 특화단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⁸⁾) 등의 유사 입법수요 빈발로 국가재정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충북 음성군은 ① 조정교부금이 시·군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선 재정지원은 조정교부금의 목적에 위배되고, ② 각 시·군이 조정교부금의

6) 「지방재정법」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구성)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재원이 되는 도세 및 지방소비세액을 징수하는 노력 및 사기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함.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7월 20일 보도자료⁹⁾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유치할 계획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분야	지역	주요 내용	민간투자(기간)
반도체	용인·평택	메모리 세계1위 수성, 시스템 점유율 10%로 확대	562.0조원(∼'42)
	구미	12인치 웨이퍼 글로벌 리딩그룹 도약	4.7조원(∼'26)
이차전지	청주	리튬황·4680 원통형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거점	4.2조원(∼'26)
	포항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年 70만톤 이상)	12.1조원(∼'27)
	새만금	핵심광물가공(전구체 등)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	6.4조원(∼'27)
	울산	이차전지 포트폴리오(LFP, 전고체 등) 다변화 거점	7.4조원(∼'30)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OLED 초격차 확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조성	17.2조원(∼'26)
		합 계	614.0조원(∼'4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7월 20일 보도자료

문 의 처

02) 6788-5338

9)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7월 20일 보도자료, “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